

의안번호	제 254 호
의 결	2008년 월 일
연 월 일	(제 273 회)

「충북과학대학」 교명 변경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8년 7월 1일

「충북과학대학」 교명 변경 동의안

의안 번호	25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년 7월 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되어 사용 중인 「충북과학대학」 이란 교명은 충북 유일의 도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가 표기되어있지 않은 실정으로
- 설립주체를 명시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신뢰성 및 인지도를 높이고 입학률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전국의 도립대학들이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있음.
- 이에, 우리대학도 교명 변경을 위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명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 받아 사용 중인 교명인 「충북과학대학」 을 설립주체를 표기한 「충북도립대학」 으로 변경코자 동의 요청
-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명변경 인가 후 관련 조례 및 학칙 개정 후 변경된 교명 사용

3. 참고자료

- 교명변경 동의안 : 붙임
- 관계법령발췌 : 붙임
 - 고등교육법 제18조(학교의 명칭)
 -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(학교의 명칭)
 -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

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

고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과학대학의 교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신청 할 것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.

1. 목 적

-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되어 사용 중인 「충북과학대학」 이란 교명은 충북 유일의 도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가 표기되어있지 않은 실정으로
- 설립주체를 명시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신뢰성 및 인지도를 높이고 입학률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전국의 도립대학들이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있음.
- 이에, 우리대학도 교명 변경을 위해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「충북도립대학」으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함.

2. 교명의 변경

- 현재의 교명 : 충북과학대학(2000. 5.20. 인가)
 - ※ 당초(설립당시) 교명 : 옥천전문대학('97. 7. 4. 충청북도조례 제12330호)
- 변경할 교명 : 충북도립대학

3. 교명의 사용

- 교육과학기술부 교명변경 인가
- 관련 조례 및 학칙 개정 후 사용

4. 향후 계획

-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변경신청 및 인가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
- 충북과학대학학칙 개정

관계법령 발췌

□ 고등교육법

제18조 (학교의 명칭) ①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의 조례로 정하며,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칭을 정함에 있어 당해 학교 설립목적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.

□ 고등교육법시행령

제8조 (학교의 명칭)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명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명칭을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과 방송대학·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,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6.5>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명칭사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1.1.29, 2008.2.29>

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

1998. 3. 26.

교 육 부

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지침

1. 목 적

제정 고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의 학교명칭을 법률적 구분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명칭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기본방향

- 고등교육기관 종류의 법적구분 유지
-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,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명 자율 사용
- 교명 자율화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예방 대책 강구

3. 적용 대상

대학, 교육대학, 방송·통신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교명제정 및 변경

4. 교명사용 기준

교명의 구성을 고유명칭, 학교특성 명칭, 학교종류 명칭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교명사용기준 설정

* 예시 : 울릉예술전문대학의 경우

‘울릉’⇒고유명칭, ‘예술’⇒학교특성명칭, ‘전문대학’⇒‘학교종류명칭’

고유명칭

지역명등 대학이 자율선정 · 사용함

학교특성명칭

학교의 설립목적 및 교육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는 명칭 자율사용

학교종류명칭

- 대학 및 교육대학, 방송·통신대학, 산업대학
 - 법률상 학교종류와 동일하거나, ‘○○대학(교)’로 사용가능
(예시)울릉산업대학(교)⇒울릉산업대학(교), 울릉대학(교)

- 기술대학 및 전문대학

- 법률상 학교종류와 동일하거나, ‘○○대학’으로 사용가능
 - (예시1) 울릉전문대학⇒울릉전문대학, 울릉대학
 - (예시2) 울릉정보전문대학⇒울릉정보전문대학, 울릉정보대학, 울릉대학

5. 교명 인가 원칙 및 절차

□ 인가 원칙

-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한 교명이 “4.교명사용기준”에 적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교명대로 승인하며, 신청교명이 현재 신청 중에 있는 교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신청일이 빠른 학교의 신청교명을 우선함
- * 단, 동일일자에 신청한 2개 이상의 교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학교설립 일이 빠른 학교를 우선하되, 학교설립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일이 빠른 학교의 신청교명을 우선함
- 현재 다른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명(신청중인 교명 포함)과 「동일」 또는 「유사」 교명으로의 신청에 대해서는 인가하지 아니함
- * 특히 분쟁(이의제기, 특허신청 등 포함)중에 있는 교명과 관련있는 신청교명은 분쟁해결시까지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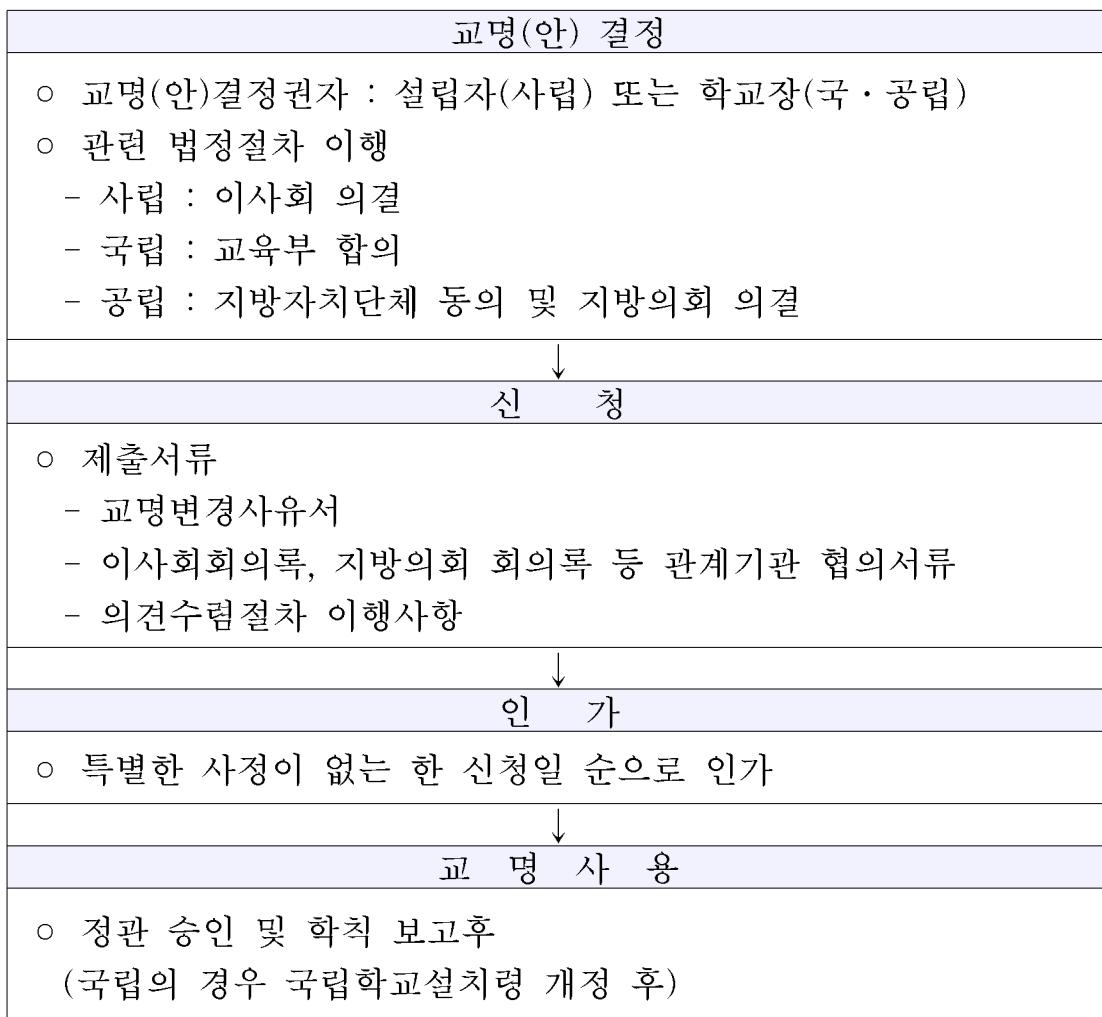
‘유사’교명의 기준

교명을 ①고유명칭, ②학교특성명칭, ③학교종류명칭으로 분류할 경우 「③학교종류명칭」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동일한 교명은 유사교명으로 봄

(예시1) 울릉대학, 울릉대학교

(예시2) 울릉정보대학, 울릉정보대학교

인가절차



6. 고등교육법제정에 따른 한시적 교명변경신청 및 변경인가

변경신청 기한 : '98. 4. 5까지

변경인가 원칙

- 변경신청 기한내의 신청 교명간 순위는 동일한 것으로 봄
- 동일 또는 유사명칭으로 신청교간 경합되는 교명에 대한 변경인가
(예시) 울릉산업대학교, 울릉정보전문대학 및 울릉예술전문대학이 '울릉
대학교', '울릉대학'이란 교명으로 변경신청한 경우
 - 신청교간에 협의조정되는 경우(협의조정기간 : '98.4.25까지)
: 신청교간 협의조정 결과에 따름

- 신청교간에 협의조정되지 않는 경우

: 교명변경을 불인가하고, 향후 신청교 및 제3자가 협의조정하지 못한 교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명을 변경신청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가하지 아니함

□ 변경인가 : '98. 5. 1

□ 변경교명 사용 : 정관변경 승인, 학칙변경 보고이후

*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 개정후 사용

7. 교명 변경에 따른 홍보

- 교명변경 취지 및 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학교종별 안내 책자를 제작, 고등학교 등에 배포
- 대학교육협의회, 전문대학협의회 등 관련 단체 활용
- 에듀넷 등 교육정보망 활용
- 특히 '전문대학' 또는 '2년제 기술대학'이 '대학'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모집 요강 등 학교에서 발간하는 각종 유인물에 반드시 2(3)년제 과정임을 명시하고,
- '산업대학'의 경우에도 '대학(교)'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모집요강 등 학교에서 발간하는 각종 유인물에 반드시 산업대학임을 명시하여야 함

8. 교명변경인가 세부기준('98. 4.28 교명인가시 결정)

◦ 교명변경기준 준수

「고등교육기관의교명사용에관한지침」의 교명변경기준에 적합한 신청교명은 원칙적으로 신청대로 인가

※ 유한전문대학 ⇒ 유한대학, 백제예술전문대학 ⇒ 백제예술대학

◦ 기존대학 권리 보호

기존대학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교명은 원칙적으로 불인가하되, 해당대학의 동의를 받은 신청교명에 한하여 인가

※ 남서울산업대학 ⇒ 남서울대학교(서울대학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인가)

◦ 공평성 및 형평성 유지

설립주체(국립, 도립 등) 및 국가명(한국)을 표기하는 신청교명은 사립과의
공평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불인가 - 종전 교육법, 국립학교설치령 등

※ 국립원주전문대학, 전남도립담양대학, 한국대학교 등 불인가

◦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존중

종전 인가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대학의 교명이 「고등교육기관의교명
사용에관한지침」의 교명변경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기존대학에 대한
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차원에서 현행 교명을 존중

※ 서울시립대학교, 한국교원대학교

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

(개정 2007. 7. 5. 교육과학기술부)

1. 개정 필요성

- └ '98년 제정 이후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대학에서 교명에 설립주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 등 제기
- └ 대학자율화 위원회에서 대학이 원할 경우 설립주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명사용 지침 개정 건의

2. 개정 내용

- └ 지침의 적용범위를 국립대학에 한정
- └ 국립대학 적용관련, ①대학이 원할 경우 설립주체 표기를 허용하고 ②교명변경시 지방의회 회의록을 제출토록 되어있는 것을 관계자(학내구 성원, 동창회 등)의 의견 수렴을 거쳐 건의하는 것으로 개정
※ '국립' 표기와 관련, 울산에 신설되는 대학명이 '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'로 결정

3. 공지 사항

- └ 설립목적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교명 사용 불가
(※ 다만, 이미 교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안정성 차원에서 인정)
 -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종류에 따른 명칭을 사용함이 원칙이고, 설립목적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경우에는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 가능
 - 따라서 설립목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
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

1. 목적

- 국립대학의 교명은 '국립학교 설치령'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바,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자 함

2. 적용 대상

- 국립 고등교육기관(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)

3. 교명 결정 원칙 및 절차

□ 결정 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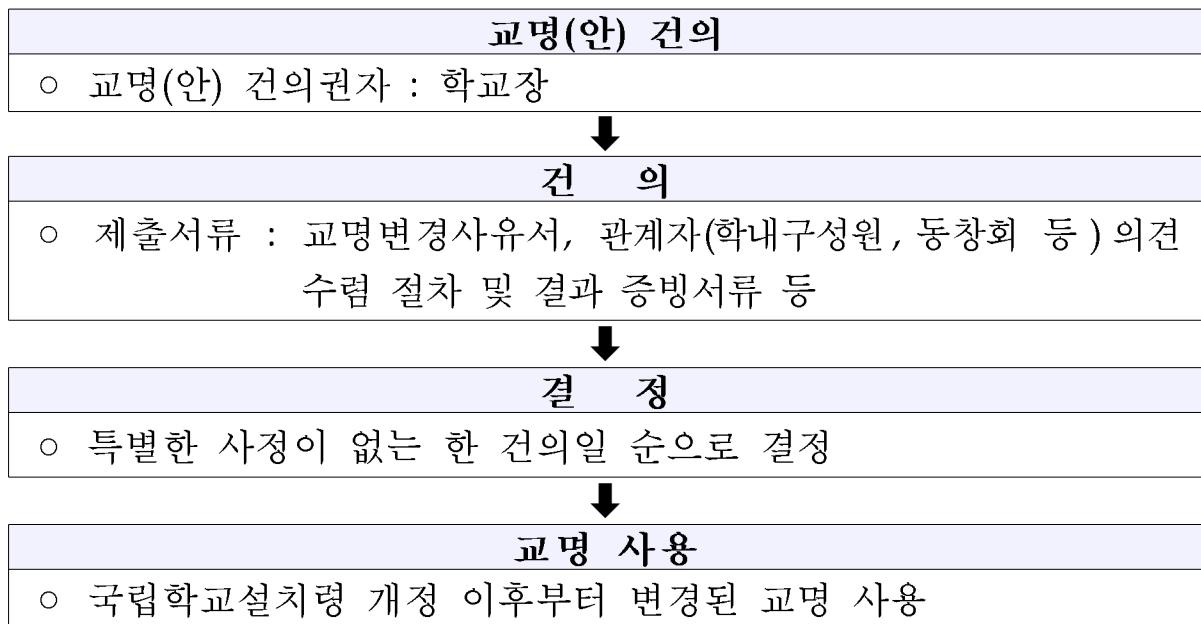
- 2개 이상의 건의교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건의일이 빠른 학교의 교명을 우선 고려함
 - 현재 다른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명과 「동일」 또는 「유사」 교명 건의는 수용하지 아니함
- * 특히, 분쟁(이의제기, 특허신청 등 포함)중에 있는 교명과 관련 있는 건의교명은 분쟁 해결시까지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

‘유사’교명 예시

교명을 ①고유명칭, ②학교특성명칭, ③학교종류명칭으로 분류할 경우 「③학교종류명칭」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동일한 교명은 유사 교명으로 봄

- (예시1) 울릉해양대학, 울릉해양대학교
- (예시2) 울릉정보대학, 울릉정보대학교

□ 처리 절차



4. 교명 변경에 따른 홍보

- 교명변경 취지 및 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학교 종별 안내 책자를 제작, 고등학교 등에 배포
 - 대학교육협의회, 전문대학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교육정보망 활용
- 전문대학, 기술대학이 ‘대학’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모집요강 등 학교에서 발간하는 각종 유인물에 반드시 2(3)년제 과정임을 명시
- ‘산업대학’의 경우에도 ‘대학(교)’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모집요강 등 학교에서 발간하는 각종 유인물에 반드시 산업대학임을 명시

5. 기타 사항

-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존중
 -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대학의 교명이 「고등교육기관의교명사용에관한 지침」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차원에서 현행 교명을 존중